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9363호, 2023. 4. 18. 공포,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이 단축되는 사건의 범위 및 시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의 종사자 자격 기준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이 단축되는 사건 범위 설정(안 제2조의3 제4항)

성폭력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이 1개월로 단축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정함.

나. 시정명령 위반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지자체 장의 위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규정 (안 제10조 및 별표2)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로 지체없이 통보하지 않거나 기간 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시정 명령을 미이행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권한을 지자체 장의 위임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정함

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정비 (안 별표1)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 등 종사자 자격기준 중 실무 경력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0. 0. ~ 11.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조의4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등의 장에 의한 사건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제10조 단서 중 “다만, 법 제38조제2항제1호”를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1호와 제38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 중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를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이하 이 표에서 “성폭력 등 방지 관련 업무”라 한다) 에”로 하고, 같은 란 3) 중 “성폭력 방지”를 “성폭력 등 방지”로, “성폭력방지”를 “성폭력 등 방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3) 중 “성폭력방지”를 “성폭력 등 방지”로 하고, 같은 란 4) 중 “성폭

력방지”를 “성폭력 등 방지”로 한다.

별표 2 제2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u>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 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u>	<u>법 제38조제1항 제1호</u>	150 만원	300 만원	500만원

부 칙

이 영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 ③ (생략)	제2조의3(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법 제5조의4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등의 장에 의한 사건을 말한다.</u>
<신 설>	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제10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 ----- ----- ----- ----- ----- -----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1호와 제38조제2항제1호-----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6392